

○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이미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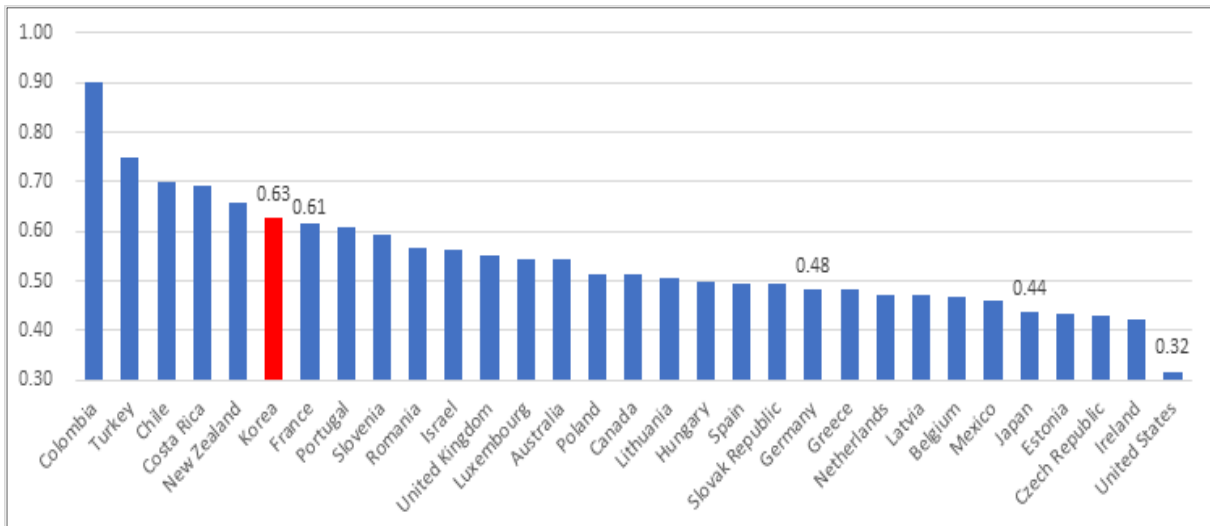
- 2019년 중위임금 대비 0.63(63%)으로 최저임금제도가 있는 OECD 31개국 중 6번째
-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은 0.49(49%)로 2012년 18대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이었던 50%에 육박(31개국 중 4번째)

○ 이제 최저임금 결정에 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

- 최저임금이 과도하게 상승할 경우, 실업 및 노동시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
 - 이것이 프랑스가 2005년 최저임금이 중위값 60%에 도달하자 추가 인상을 멈춘 이유
- ※ 최경수, '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' 한국개발연구원. 2018
- 현행 체제하에서는 소모적 논쟁과 극심한 노사 간 힘겨루기로 협상이 파국에 이르고 결국 공익 위원 안으로 정해지는 파행이 반복되고 있음

20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3%로 OECD 31개국 중 6번째 순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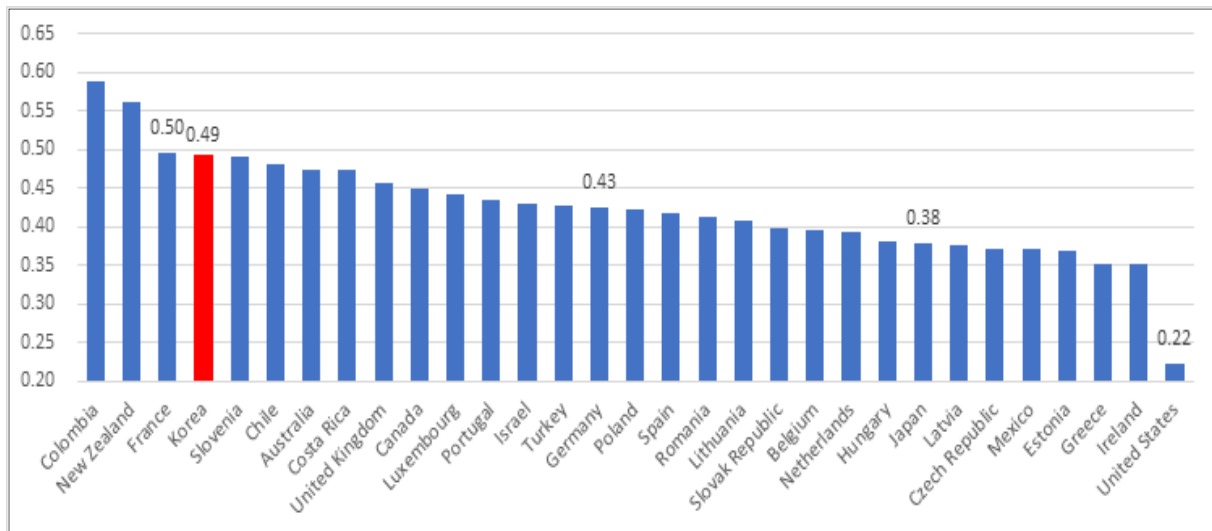
단위: %



자료: OECD Dataset :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-time workers

2019년 한국의 최저임금은 평균임금 대비 49%로 OECD 31개국 중 4번째 순위

단위: %



자료: OECD Dataset : Minimum relative to average wages of full-time workers